

용지세무대학교	생활관 규정	문서번호	7-3-01(M)-0
		제정일자	04.11.16
		최근개정	23.12.27
		주관부서	생활관
		홈페이지공개	공개

용지세무대학교 생활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지세무대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1., 2015.07.07.>

제2조(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용지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입주기간) 생활관의 입주기간은 용지세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의 학칙에서 규정하는 수업기간, 방학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2015.07.07., 2023.12.27>

제4조(입주자격 및 입주생 선발) ① 입주자격은 본 대학의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단, 졸업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7.01.01.>

② 대학의 신입생은 생활관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한 학생은 입주포기서[서식 제2호 입주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생활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1., 2023.12.27.>

③ 생활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 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운영팀에서 정한 입주신청서[생활관 규정 서식 제1호]를 전산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9.04.21., 2012.12.11>

④ 입주 대상자 선발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다음의 순서로 선발한다.

<개정 2009.12.11., 2013.06.13., 개정 2020.11.30.>

1. 직전 방학기간동안 생활관 거주자 <신설 2023.12.27.>
2. 신입생
3. 재학생

⑤ 자기학습 불성실자, 강제 퇴관자에 한해서는 다음 학기 입주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2.02.24., 개정 2020.11.30.>

제5조(이용제한) ① 생활관 입주 학생이나 생활관 관계자 외에는 생활관내 출입 또는 숙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1. 생활관장 또는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이나 숙박
 2. 직무를 위한 대학 교직원의 출입이나 숙박
 3. 돌발적인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의 출입이나 숙박
- ② 생활관장은 위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제2장 조직

제6조(대표 및 관리운영팀) ① 생활관은 생활관장이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생활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생활관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4.21., 2023.12.27.>

② 생활관 관리운영팀은 사감 및 자치회로 구성하고, 대학 내 사무직원으로 관리운영팀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2023.12.27.>

제7조(세부업무) 생활관 관리운영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 생활관 운영계획 수립
2. 생활관 입·퇴사에 관한 업무
3. 삭제 <2011.02.24.>
4. 생활관 시설관리 업무
5. 입주생에 대한 물품의 지급 및 관리업무
6. 생활관 후생복지시설의 관리업무
7. 기타 생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제8조(생활관 운영위원회) 생활관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는 교무위원회 위원과 생활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2.25., 2012.03.27., 2023.12.27.>

제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의 개정 <개정 2007.01.01.>
2. 삭제 <2011.02.24.>
3. 삭제 <2011.02.24.>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제외한 외부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7.01.01.>

제4장 경비

제12조(경비부담) 입주생이 훼손한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관리비 납부) ① 입주생은 생활관 관리비(이하 "생활관비"라고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입주인원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7.01.01., 2023.12.27>

② 생활관 관리비는 생활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류비 등의 소요금액이므로 퇴사 시 환불 되지 않는다. <개정 2008.03.01., 2023.12.27.>

■ 생활관 관리비 <개정 2009.07.24., 2023.12.27.>

학기입사	제세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유류비 등) ÷ 인원수
방학입사	

③ 삭제 <2014.04.01.>

④ 삭제 <2008.03.01.>

⑤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을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을 한 후 생활관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생활관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단, 생활관장 부재 시 사감이 보고한다. <개정 2009.12.11., 2012.12.11., 2015.07.07., 2023.12.27.>

⑥ 삭제 <2008.03.01.>

⑦ 삭제 <2023.12..27.>

⑧ 고유개인식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하에 제공한다. <신설 2013.06.13.>

제14조(납부기간) 생활관비는 입주 개시 전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한다.

제15조(생활관비의 용도) 생활관비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생활관 자치회

제17조(자치회) 입주생의 생활관내 생활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관자치회 (이하 '자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자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과 각 층별로 1~2인의 층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3.25., 2023.12.27.>

②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11.>

③ 자치회장 및 자치회 층장의 임기는 6개월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④ 회장과 층장의 선임은 입주생 중에서 복수로 선발하여 생활관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1.01.>

⑤ 자기학습 불성실자는 자치회 층장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09.01.>

⑥ 근무태만 등으로 자치회 층장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생활관장이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제19조(업무) 자치회는 입주생에 대하여 관장의 지도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정표에 의한 일과 진행
2. 취침점호, 시설점검 <개정 2009.12.11.>
3. 외박자의 파악 <개정 2007.01.01.>
4. 환자발생 등 긴급사항을 생활관 운영팀 또는 당직자에게 보고 <개정 2007.01.01.>
5. 생활관 내외의 청결 점검
6. 생활관내 질서 및 정숙유지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지도
7. 제규정 위반자의 선도와 벌점부과
8. 기타 생활관 업무보조

제6장 생활관 생활

제20조(입사) 입주생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관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제21조(퇴관) ① 생활관장은 입주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입주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07.01.01.>

1.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관에서는 치료가 어렵거나 다른 입주생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적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3.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4. 벌점누적으로 인해 퇴관조치를 받았을 경우

※ 강제 퇴관자 재 입주 기준

강제 퇴관자 재 입주 허용요건	퇴관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후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 (단, 누적벌점 15점이 되어 강제퇴관시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까지 재입주가 불가함) <개정 2009.12.11., 2014.04.01., 2014.07.14., 2023.12.27.>
재 입주 불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가해자 ▶ 생활관내 남녀 혼숙자 ▶ 음주후 소란 행위(기물파괴, 구타 등)자 ▶ 교직원 및 자치회의 정당한 지시 거부 행위 ▶ 삭제 <2015.07.07.>

5. 기타 생활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사항인 경우

- ② 생활관장은 생활관내의 질서유지나 면학분위기의 조성에 장애가 되는 입주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01.01.>

제22조(일정표) 입주생은 일정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기상조건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3.25., 개정 2020.11.30.>

시 간	내 용	비 고
23 : 30 ~ 23 : 50	취침점호	
23 : 50	소등 및 취침	

제23조(질서유지) 입주생은 생활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관리) ① 입주생은 생활관을 비롯한 학교전반의 각종시설물, 비품, 공동사용 물품에 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관리책임은 입주생 개인이 진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이나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입주생은 입·퇴사 시 생활관 담당자 혹은 자치회 동행하에 비품 체크[생활관규정 서식 제4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7.07.10>

제25조(면회) ① 방문자의 면회는 생활관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09.04.21>

제26조(개인호출) 입주생은 생활관 운영팀의 호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주생 부재 시 같은 방 수신자가 해당자에게 알린다. <개정 2007.01.01.>

제27조(음주, 흡연) 생활관내에서는 일체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한다.

제28조(화재예방) 입주생은 허가되지 않은 일체의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촛불, 가스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비상시 행동) 입주생은 비상시에 생활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1>

제30조(기타 준수사항) 입주생은 생활관내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관내에서는 항상 단정한 복장을 하고 정숙을 하여야 한다.
2. 생활관내에서는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
3. 호실의 청결, 정돈, 환기상태 등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점등이나 소등에 관하여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점등시간 중이라도 외출 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5. 화재의 발생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처음 인지한 자가 자치회 임원, 생활관 운영팀, 당직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01.01.>

제31조(외박) ① 외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 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며 생활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2.24., 2012.12.11.>

② 외박신청서<생활관규정 서식 제1호>에 적시한 날짜에 귀사하지 못할 경우 귀사 후 실제 귀사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01.01., 개정 2015.07.07.>

③ 외박 및 사후외박의 승인범위는 자기학습 출석인정 사유를 준용(단, 응급질환 또는 수술로 외박할 경우 해당일을 인정 할 수 있다.)하며 그 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2011.02.24., 2015.07.07.>

④ 사후 외박 계 제출기간은 귀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인정된다. <신설 2008.09.01.>
<출석인정허가원 및 시험불참허가원 인정범위표> 삭제 <2013.06.13.>

⑤ 일주일 이상 장기 무단 외박자는 학부모에게 통보 및 퇴관시킬 수 있다. <신설 2020.11.30., 2023.12.27.>

제32조(귀관시간) 외박의 귀관시간은 귀관예정일 07:00 ~ 23:00까지로 한다. <개정 2009.12.11.>

제33조(점호) 점호는 생활관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원파악, 청소상태, 비품 보관 상태,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상태, 기타 생활 상태를 점검하는 순으로 한다. <개정 2009.12.11.>

제34조(폐문) 폐문은 23:30 ~ 05:00 으로 한다. <개정 2009.12.11., 2012.12.11.>

제7장 포상 및 벌점 제도와 징계요구

제35조(모범호실 표창) ①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이 되는 호실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 ② 모범호실은 매학기 2회 이상 생활관 생활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 ③ 모범호실의 선정에 참고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11.>
1. 생활관 규정의 준수여부
 2.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생활태도
 3. 면학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노력
 4. 학생의 신분에 적합한 예의범절 및 선행
 5. 공동생활이나 발전을 위한 창안
 6. 지시사항의 숙선수범
 7. 기타 생활관에서의 모범이 되는 행위
- ④ 모범호실은 전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를 갖게 한다.

제36조(벌점 제도) ① 생활관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벌점 제도를 실시한다.

- ② 생활관 관리운영팀(사감, 자치회)은 입주학생의 과실을 지적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7.01.01., 2015.07.07., 2023.12.27.>
- ③ 벌점부과 사항은 생활관장에게 보고하며 강제퇴관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은 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11.>
- ④ 삭제 <2015.07.07.>
- ⑤ 입주생 관리자는 경미한 벌점으로서 잘못을 뉘우치는 학생은 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삭제할 수 있다.
- ⑥ 규정 제39조(벌점기준)에 의하여 한 학기분 벌점이 15점 이상인 학생은 강제 퇴관 대상자가 된다. <신설 2007.01.01., 개정 2015.07.07.>
- ⑦ 벌점의 소멸기간은 벌점부과일이 속한 해당학기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12.11., 2014.04.01.>
- ※ 해당학기 기준
- 1학기 : 1학기 개강일 ~ 2학기 개강 전
 - 2학기 : 2학기 개강일 ~ 익년 1학기 개강 전
- ⑧ 삭제 <2023.12.27.>
- ⑨ 삭제 <2023.12.27.>

제37조(징계요구) 생활관장과 대학의 장은 생활관내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활태도나 벌점을 고려하여 입주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제38조(상점 제도) 입주생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상점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1. 정기 및 수시 검사 시 청소 상태가 양호한 자 <2009.12.11.>

부 과 대 상	상점
정기 및 수시 검사 시 청소 상태가 양호한 자	1~3점

2. 봉사활동 <2009.12.11., 2013.06.13.>

구 분	내 용	일 자	대 상	상점
다음 중 택 1	생활관내·외 청소	1~5일	공통	1~3점

3. 상점의 소멸기간은 상점부여일이 속한 해당학기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12.11., 2014.04.01., 2015.07.07.>

※ 해당학기 기준

- 1학기 : 1학기 개강일 ~ 2학기 개강 전
- 2학기 : 2학기 개강일 ~ 익년 1학기 개강 전

제39조(벌점기준) 벌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4.07.14., 2015.07.07., 2020.11.30.>

내 용	부과 벌점	비 고
성희롱 가해자	퇴관	
음주 후 생활관내 소란(기물파손, 폭행 등) 행위	퇴관	
입주 무자격자의 차명에 의한 입주	퇴관	
생활관내 절도 및 폭행에 관한 행위	퇴관	
비일상적 단체행위 및 시위 등의 주동자	퇴관	
당직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퇴관	
생활관내 남녀 혼숙 및 혼방 행위	퇴관	
당직자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순행위	7점	
자치회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7점	
생활관내 음주행위	7점	연대책임
점호 이후 생활관 이탈행위	7점	
옥상, 생활관내 지하(점호 이후)등 출입금지 장소 출입행위	5점	
비품, 시설물 등의 고의적 훼손행위	5점	실비보상
비일상적 단체행위 및 시위 등의 단순가담자	5점	
관리자 등의 허가 없는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 허용 행위	5점	
타인물품의 무단사용, 타인의 우편물 및 택배 등의 개봉 또는 열람행위	5점	

무단 호실변경 및 비밀번호 알림 행위	5점	
생활관내 흡연 및 카드나 화투 등 도박행위	5점	연대책임
생활관내 주류반입 및 소지	5점	연대책임
대리점호	5점	연대책임
생활관내에서의 난방 및 조리기구, 다리미 등 기타 비인가 전열기구 사용 및 반입 행위	5점	연대책임
점호 이후 생활관 출입 (오전 01시 이후)	5점	
점호 이후 생활관 출입 (오후 24시 이후)	3점	
외박신청서의 허위기재 행위	3점	
생활관내 소란행위	3점	연대책임
생활관내 식사행위 ※ 허용식품 : 스낵류, 음료수, 과일, 제빵. (단, 피자빵, 소시지빵, 야채호빵, 찰바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제빵류와 치즈볼, 고로케 등 가공 과정 중 기름으로 조리 된 제빵류, 소스가 첨가된 제빵류는 불허)	2점	연대책임
생활관 복도 내 슬리퍼 및 신발 착용행위	2점	
생활관내 호실 청소상태 불량(호실 사용자 전원 각 2점씩 부과)	2점	연대책임
소등 이후 타인호실 출입(호실 사용자 전원 2점씩 부과)	2점	연대책임
생활관 내.외 오물 무단 투척	2점	
점호지각 및 점호태도 불량	1점	

※ 연대책임의 항목 위 규정적용 시 명확하게 해당행위를 하지 않은 사생에게는 벌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07.14.>

※ 누적벌점이 15점부터는 퇴관대상자입니다.

※ 인가전열기구 :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스텐드, 휴대용 전자제품 충전기, 노트북, 카세트, MP3, PMP, PDA 및 기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품목.

[서식 제1호] <개정 2015.07.07., 2023.12.27.>

		결 재	담 당	과 장	관 장
외박신청서 (년 학기)					
계열 및 학과		학 번			
성 명		호 실	제()생활관	호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외박 일자	년 월 일	귀관예정 일 자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외박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사유가 허위일 경우 생활관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 외박사유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생활관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박을 신청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본인 : (서명)</p> <p>웅지생활관장 귀하</p>					
<p>※ 외박의 귀관시간은 귀관예정일 07:00 ~ 23:00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서식 제2호] <서식추가 2013.06.13., 개정 2015.07.07.>

		결재	담당	과장	관장
사후외박신청서 (년 학기)					
계열 및 학과		학 번			
성 명		호 실	제()생활관	호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외박 일자	년 월 일	귀관예정 일 자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외박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사유가 허위일 경우 생활관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 외박사유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생활관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박을 신청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위본인 : (서명)</p> <p>웅지생활관장 귀하</p>					
<p>※ 외박의 귀관시간은 귀관예정일 07:00 ~ 23:00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서식 제3호]

202()학년도 학기 생활관 비품 체크리스트 (앞면)

작성시 주의 사항
 가. 2층 침대를 사용하는 학생만 사다리 상태에 대해 기재 요망
 나. 옷장, 책상 등 가구류에서 내부균열 및 선반, 고정나사(hinge) 등 구성품이 부족하거나 손실된 경우 세부내용에 기재 바람
 다. 공통품목의 고장관련 세부사항은 하단부에 별도로 기재요망
 라. 수리확인란은 수리 후 서명하는 란입니다.

() 생활관 () 호실	개 인	학과 :		학번 :			이름 :		
		항 목	존재 (有/無)	고장 (有/無)	상 태			수리확인	고 장 관 련 세 부 내 용
					상	중	하		
		침 대	有 / 無	有 / 無					
		사다리	有 / 無	有 / 無					
		옷 장	有 / 無	有 / 無					
		신발장	有 / 無	有 / 無					
		학과 :		학번 :			이름 :		
		항 목	존재 (有/無)	고장 (有/無)	상 태			수리확인	고 장 관 련 세 부 내 용
					상	중	하		
침 대	有 / 無	有 / 無							
사다리	有 / 無	有 / 無							
옷 장	有 / 無	有 / 無							
신발장	有 / 無	有 / 無							
학과 :		학번 :			이름 :				
항 목	존재 (有/無)	고장 (有/無)	상 태			수리확인	고 장 관 련 세 부 내 용		
			상	중	하				
침 대	有 / 無	有 / 無							
사다리	有 / 無	有 / 無							
옷 장	有 / 無	有 / 無							
신발장	有 / 無	有 / 無							
학과 :		학번 :			이름 :				
항 목	존재 (有/無)	고장 (有/無)	상 태			수리확인	고 장 관 련 세 부 내 용		
			상	중	하				
침 대	有 / 無	有 / 無							
사다리	有 / 無	有 / 無							
옷 장	有 / 無	有 / 無							
신발장	有 / 無	有 / 無							
학과 :		학번 :			이름 :				
항 목	존재 (有/無)	고장 (有/無)	상 태			수리확인	고 장 관 련 세 부 내 용		
			상	중	하				
침 대	有 / 無	有 / 無							
사다리	有 / 無	有 / 無							
옷 장	有 / 無	有 / 無							
신발장	有 / 無	有 / 無							

202()학년도 학기 생활관 비품 체크리스트 (뒷면)

작성시 주의 사항

1. 옷장, 책상 등 가구류에서 내부균열 및 선반, 고정나사(hinge) 등 구성품이 부족하거나 손실된 경우 세부내용에 기재 바랍니다.
2. 수리확인란은 수리 후 서명하는 란입니다.
3. 거울 및 선풍기 거치대가 없는 경우 반드시 기재바라며,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호실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공 공	공동책임항목						고 장 관 련 세 부 내 용	
	항목	존재 (有/無)	고장 (有/無)	상태				수리확인
				상	중	하		
	호실문(유격/소음)	有 / 無	有 / 無					
	호실문(다이얼키)	有 / 無	有 / 無					
	냉장고	有 / 無	有 / 無					
	책 상	有 / 無	有 / 無					
	의 자	2개/1개/無	2개/1개/無					
	거울/거치대	有 / 無	有 / 無					
	방충망/틀	有 / 無	有 / 無					
	버티컬(브라인드)	有 / 無	有 / 無					
	수납장(라디에터장)	有 / 無	有 / 無					
	스피커		有 / 無					
	장판		有 / 無					
	누수상태		有 / 無					
	곰팡이		有 / 無					
	라디에이터커버(3생활관)		有 / 無					
실 비 면 상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주요품목 실비변상 단가							
		품목	단가	품목	단가			
		거울	₩15,000	옷장용 바구니 中	₩5,000			
		대우냉장고내부선반	₩13,500	옷장 문등 구성품	실구입단가적용			
		대우냉장고내부 봉	₩10,000	책상 문등 구성품	실구입단가적용			
		LG냉고냉동실 커버	₩4,000	호실용다이얼키	실구입단가적용			
		LG냉장고냉장 실 선반	₩7,000	사다리	제작단가적용			
		LG냉장고내부 봉	₩2,000	메트리스	실구입단가적용			
		LG냉장고내부음료수커버	₩6,000	선풍기커버	실구입단가적용			
		1,2생활관방충망	₩20,000	선풍기날개	실구입단가적용			
		3생활관방충망	₩10,000	라디에이터커버	₩1,200			
		방충망틀	₩50,000	신발장 문등 구성품	실구입단가적용			
		옷장용 바구니大	₩10,000	스텐드형 선풍기	₩35,000			

- * 주의
발생할 경우 변상 조치
1. 호실의 집기/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경우에는 학생처에 보고한 후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하며, 퇴사 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 시 호실 정리, 정돈 후 학생처 직원에게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3. 각 호실 내 가구 및 침대 임의 배치 금지
 4. 입주시 작성한 생활관 비품 체크리스트를 보고 퇴사시 비교하여 손망살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5. 내부 구성품의 이상 유무까지 확인 바랍니다.
 6.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4호] <서식추가 개정 2023.12.27.>

생활관 벌점부과 확인서

계열 및 학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활관 및 호실	제()생활관 호실	연락처		생활관 관 장
규정위반 일시	202()년 월 일 / ()시 - ()분				
부과벌점	누적벌점 ()점	자치회 기재사항			
		()점	담당자	(서 명)	
규정위반 내용	(자세히 기재 요망)				
본인 확인					
※ 누적벌점 15점이 되어 강제퇴관시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까지 재입주가 불가함					
※ 상 * 벌점소멸기간은 부과일이 속한 해당학기 종료일로 한다 ▶ 해당학기 기준 - 1학기:1학기 개강일 ~ 2학기 개강전 / 2학기 : 2학기 개강일 ~ 익년 1학기 개강전					
상기 본인은 생활관 규정(제3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조치된 것을 인정합니다.					
202 년 월 일					
(서명)					
생 활 관 장 귀하					

[서식 제5호]

생활관 상점부여 확인서

계열 및 학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활관 및 호실	제()생활관 호실	연락처		생활관 관 장
규정위반 일시	201()년 월 일 / ()시 - ()분				
부과벌점	누적벌점()점	자치회 기재사항			
		()점	담당자	(서 명)	
규정위반 내용	(자세히 기재 요망)				
본인 확인					
<p>※ 누적벌점 15점이 되어 강제퇴관시 해당학기 및 다음학기까지 재입주 불가</p>					
<p>※ 상 * 벌점소멸기간은 부과일이 속한 해당학기 종료일로 한다 ▶ 해당학기 기준 - 1학기:1학기 개강일 ~ 2학기 개강전 / 2학기 : 2학기 개강일 ~ 익년 1학기 개강전</p>					
<p>상기 본인은 생활관 규정(제3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조치된 것을 인정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202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p>					
<p style="font-size: 1.2em;">생 활 관 장 귀하</p>					

[서식 제6호] <서식추가, 2023.12.27.>

생활관 입주 포기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 과		학 번		학년	
신청 사유					

상기 학생 본인은 해당 사유로 인하여 생활관 입주를 포기하며 아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입주 기간이 지나기 전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생활관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입주 포기 후 재신청 시 기존 신청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로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은 생활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3. 해당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학기 생활관비 무료에 대한 혜택을 포기합니다.
4. 작성자의 보호자 또한 해당 신청서의 내용 및 제출 상황을 알고 있으며, 보호자 서명란 위조 시 생활관 징계 대상자가 됩니다.

2024. . .

본인: (서명)

보호자: (서명)

웅지생활관장 귀하

부 칙 <1판-제정/시행 2004.11.16.>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05.07.01.>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06.11.01.>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판-개정/시행 2007.01.0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판-개정/시행 2007.07.10.>

이 규정은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판-개정/시행 2008.03.0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판-개정/시행 2008.09.01.>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판-개정/시행 2009.02.25.>

이 규정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판-개정/시행 2009.03.0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판-개정/시행 2009.04.21.>

이 규정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판-개정/시행 2009.06.03.>

이 규정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판-개정/시행 2009.07.24.>

이 규정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판-개정/시행 2009.12.11.>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판-개정/시행 2010.02.25.>

이 규정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판-개정 2010.03.27.> <시행 2010.03.25.>

이 규정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판-개정/시행 2011.02.24.>

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판-개정/시행 2012.03.27.>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판-개정/시행 2012.12.11.>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18

부 칙 <20판-개정/시행 2013.06.13.>

이 규정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판-개정/시행 2014.04.01.>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판-개정/시행 2014.07.14.>

이 규정은 2014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3판-개정/시행 2015.07.07.>

이 규정은 2015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판-개정/시행 2020.01.30.>

이 규정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5판-개정/시행 2020.11.30.> <공포 2020.12.07.>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6판-개정 2023.12.27.> <공포 2024.02.01.>

이 규정은 2024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